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계약 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 방법 >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좋은날재가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농협 351-1281-4214-13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 후 30일 이내)

-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2. 본인부담금

-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3)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9.0%
- 4) 기타비용 : 한도초과금액 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6년 1월 수가변동 개정됨*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산정) 및 본인부담금

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0	2,047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210분 이상	65,530	9,530	5,898	3,932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제 3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해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4.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 31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타 센터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